- (3)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 재료는 변형·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 는 아니 된다.
- (4) 거푸집 동바리에 사용하는 동바리·멍에 등 주요 부분의 강재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관한 규칙 별표 10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(5) 장선 및 멍에는 거푸집 널과 원활히 결합될 수 있는 재료나 결합방식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,
- (6) 장선 및 멍에로 사용하는 목재는 구조용 목재를 사용하여야 하며, 원형 강관은 KS D 3566, 각형 강관은 KS D 3568, 경량 형강은 KS D 3530, 기타의 강재는 KS D 3503 또는 KS D 3515에 적합하여야 한다.
- (7) 파이프 서포트 동바리는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,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.
- (8) 높이 5 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및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거푸집 동바리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2에 따라 시공전 관계전문가(기술사법에 등록된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구조기술사)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.
- (9) 조립도에는 동바리·멍에 등 부재의 재질·단면규격·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
- (10) 재료,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건설장비 사용을 원착으로 하며, 부치나 길이가 작은 재료, 기구 또는 공구 등은 양중함이나 달줄·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11) 거푸집 동바리 조립 및 해체작업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·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 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.

## 5.2 동바리 조립작업 준수사항